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
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4년 5월 29일 「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(제24조 제1항 제23호)
- 나.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완화해야하는 대상국가에 추가(제24조 제16항 제16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14. ~ 12. 1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아랍에미리트연합국

제24조제16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아랍에미리트연합국

부 칙
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2. (생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3. 아랍에미리트연합국</u>
② ~ ⑮ (생략)	② ~ ⑮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16>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.	
1. ~ 15. (생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6. 아랍에미리트연합국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859